

울산지방법원 2024. 3. 29 선고 2022가단1300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4나1178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29 선고 2022가단130080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1. B

2. C

변론종결 2024. 3. 8.

판결선고 2024. 3. 29.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D에게

울산지방법원 2022. 8. 23. 접수 제900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과 D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D에게 울산지방법원 2022. 8. 23. 접수 제90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0524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17. ‘D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76,470원과 이 중 17,200,852원에 대하여 200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 원고가 시효연장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22차전2646호로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649269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1. 14. ‘D는 원고에게 25,300,918원과 그 중 8,570,412원에 대하여 2001. 4. 3.부터 2003. 8. 2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9,273,942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3. 8. 2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D의 재산처분행위

가)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8. 20. 매매(거래가액은 1억 원이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21. 9. 3. 접수 제123013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 9. 3.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21. 9. 3. 접수 제123014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22. 6. 1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22. 6. 16. 접수 제659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나) 이후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22. 8. 23. 접수 제90083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22. 8. 2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22. 8. 23. 접수 제90084호로 가등기권자 C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D의 재산상태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매매예약 이후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전날 인 2022. 12. 15. 기준 D는 원고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에 따른 156,754,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반면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체결 및 매매예약 당시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지급명령 및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므로 위 각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과 인접한 2022. 12. 15.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156,754,2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D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8. 20.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억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체결 당시의 가격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인된다. 그렇다면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D의 위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D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인 G의 작은 아버지인 H의 부탁으로 2022. 8. 23.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위 인정근거들 및 을 제1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 B의 남편인 G은 D가 아닌 I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돈을 빌린 사람은 I로 보아야 하고 만일 D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맞다면 D가 자기 명의의 계좌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피고 B이 쉽게 추측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과 C은 친구 사이이므로 C이 과거부터 D와 금전거래를 하여 서로 잘 알고 있었다면 H은 C을 통해 D의 경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 B에게 알려주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③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D는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같은 날 피고 C에게도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제3자에 의한 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이에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B과 D 사이에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할뿐더러 설령 피고 B이 D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D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별지